

항 고 장

항 고 인(고소인) ○ ○ ○ (전화번호 ○○○ - ○○○○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

피고소인 △ △ (전화번호 ○○○ - ○○○○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

피고소인에 대한 ○○지방검찰청 20○○ 형제 ○○○○○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○○지방검찰청 검사 □□□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○○. ○. ○.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바,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.

(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○○. ○. ○. 수령하였습니다.)

항 고 이 유

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인 바,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서 류

1.불기소처분통지서



2000. 0. 0.

항 고 인 ㅇ ㅇ ㅇ (인)

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의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Repair 기반건화점 또는 기점 제출기간 리브딩 2001년			
	지방검찰청 또는 지청		도구니 30현대
항 고 인	고소인, 고발인	피항고인	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
제출부수	항고장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260조 검찰청법 10조
항고기각 결정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	(재정신청) • 근거 : 형사소송법 260조		
기타	 항고전치주의 -재정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 항고를 하여야 하며, 이 항고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-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-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-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		